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01

발의연월일: 2025. 3. 27.

발 의 자: 송옥주・박 정・전종덕

한민수 · 윤준병 · 이수진

한정애 · 김남희 · 추미애

박해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생산업 및 동물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고,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생산업자나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위탁관리업을 병행하면서 이익을 우선시하게 되면 위탁관리 과정에서 동물보호가 소홀해질수 있는데, 동물에게 적절한 휴식과 치료를 제공하는 대신 동물을 빨리 번식시키거나 판매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음. 또한,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허가증을 출입구와 안내대같이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여 소비자가 해당 업체를 신뢰하고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동물생산업 및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발급받은 허가증을 출입구 등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보호와 건강 증진에 기 여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5항 신설 등).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물생산업 및 제3호에 따른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할수 없다.

제78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69조제1항에 따른 허가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을 출입구 등 영업장 내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
- 5.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제78조제4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69조제1항에 따른 허가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을 출입구 등 영업장 내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
- 4.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제97조제5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의2. 제78조제2항제5호 또는 제78조제4항제4호를 위반하여 동물보

호를 목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를 한 영업자 제101조제2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제78조제2항제4호 또는 제78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허가증을 영업장 내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지 아니한 영업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3조(영업의 등록) ① ~ ④	제73조(영업의 등록)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물생산업 및 제3호에 따른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위탁관
	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동물생산업자는 제1항에서	2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u>.</u>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4. 제69</u> 조제1항에 따른 허가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을 출입
	구 등 영업장 내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
<u><신 설></u>	5.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동
	물보호를 목적으로 기부금품
	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지 아
	<u>니할 것</u>

- ③ (생 략)
- ④ 동물판매업자(동물생산업자 및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 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설>

<u><신</u>설>

- ⑤ · ⑥ (생 략) 제97조(벌칙) ① ~ ④ (생 략)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10. (생 략) <u><신 설></u>

③ (현행과 같음)	
4	
1. • 2. (현행과 같음)	
3. 제69조제1항에 따른 허가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을 출입	
구 등 영업장 내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	
4.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허가를 받은자는 동	
물보호를 목적으로 기부금품	
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지 아	
<u>니할 것</u>	
⑤ · ⑥ (현행과 같음)	
97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제78조제2항제5호 또는	

제78조제4항제4호를 위반하여

11. · 12. (생략)

⑥ (생략)

제101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17. (생 략) <신 설>

18. (생략)

③ ~ ⑤ (생 략)

동물보호를목적으로기부금품을모집하는행위를한영업자

- 11. 12. (현행과 같음)
- ⑥ (현행과 같음)

제10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2

-.

- 1. ~ 17. (현행과 같음)
- 17의2. 제78조제2항제4호 또는 제78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허가증을 영업장 내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지 아니한 영업자
- 18. (현행과 같음)
- ③ ~ ⑤ (현행과 같음)